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집행부 제출】
검 토 보 고 서



2025. 9.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18.

기획재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세무과장)
- 제출일자: 2025. 9. 3.(수)
- 회부일자: 2025. 9. 3.(수)
- 검토기간: 2025. 9. 4.(목) ~ 9. 10.(수)

2. 제안이유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구의회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5,361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10,000을 출연
 - ※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 조치로 법정 출연비율 인하(1만분의 1.2 → 1만분의 1), 관련 법령 '25년 말 개정 예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5. 검토의견

-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지방세입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구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지방세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지방자치단체 세정운영 협력 지원,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우리 구에서 2026년도에 부담해야 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산출되며, 전전년도(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536억 1,454억 1천원)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1,536만 1천 원임. (2025년도 1,798만 6천 원)
 -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조직 혁신방안 발표에 따라 출연비율 인하(1.2→1.0), 하반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정부의 감면 확대 정책 등으로 지방세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